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2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김태선 · 장철민 · 이용선
허영 · 허종식 · 이용우
김주영 · 정춘생 · 윤후덕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절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

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 중 “대가”를 “대가.”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후단 신설>	11. -----.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생략)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u>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u> 제46조(과태료)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u> 4. ~ 7. (생략) ⑥ (생략)	<u><삭 제></u> 제46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